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 번호	
----------	--

제안연월일 : 2024. 11.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건명	의안 번호	대표발의자	제안일	심사경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00016	윤준병의원	'24.5.30	-제415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4.6.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2200088	이원택의원	'24.6.3	
	2200260	문금주의원	'24.6.10	
	2200301	황명선의원	'24.6.11	-제416회국회(임시회) 제3차 전체회의 (’24.7.16.) 상정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2200505	이병진의원	'24.6.14	
	2200585	주철현의원	'24.6.18	
	2201366	위성근의원	'24.7.4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24.8.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 후 농림축산식품법안 심사소위원회 회부
	2201501	문대림의원	'24.7.8	
	2201530	서삼석의원	'24.7.9	
	2201805	임미애의원	'24.7.16	
	2201880	박수현의원	'24.7.17	
	2202041	여기구의원	'24.7.19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4.11.21.) 상정
	2202347	송옥주의원	'24.7.29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 부(’24.9.24.)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4.11.21.) 상정
	2204538	이병진의원	'24.10.4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 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 부(’24.11.11.)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4.11.21.) 상정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2024.11.21.)

에서 위 14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에서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조정안으로 의결함.

다.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에서 안전조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14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농산물 가격변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기후변화 및 기상 재해 등으로 농산물 수급 불안정이 심화되어 농가경영의 불안정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부는 농산물 가격 하락 시에 생산자 보호를 위한 가격지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상승 시에 무분별한 수입농산물 확대로 농산물 가격을 폭락시켜 사실상 농가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후위기 고물가시대, 소비자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통한 농산물 가격안정이 국민경제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도록 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며, 계약생산 제도를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가격폭등 시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및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계약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 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다. 농산물의 가격폭등 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규정함(안 제9조의2 신설).

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의2 신설).

마.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

부장관이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인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함(안 제16조의2 신설).

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대상 품목, 기준가격, 품목
선정 주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16조의3 신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 ①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다.

②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생산자를”을 “생산자와 소비자를”로, “하한가격”을 “하한가격과 상한가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생산량 및 예상 수급상황”을 “생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경영상황”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협약하여야”를 “협약한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제9조제1항 본문 중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물의”를 “농산물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채소류 등의”를 “농산물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제9조의3으로 하고,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한 농산물

의 판매 지원

3.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용권 지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중 “협의를”을 “협의를 한 후 수급조정위원회의 심의”로 한다.

제2장에 제13조의2·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① 제1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영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균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장가격
3. 차액의 지급비율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

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맞는 사람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1항제3호 중 “제9조의2제3항”을 “제9조의3제3항”으로 한다.

제5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3조”를 “제9조의3, 제13조”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

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시행

제9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

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5호의2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의2를 제4호의2로 한다.

1. 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1.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5조의4(수급조절위원회의 설치)</u> ① <u>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해양수산부에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를 각각 둔다.</u> ② <u>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와 수산물수급조절위원회(이하 “수급조절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u> <u>1. 농수산물의 수급상황 판단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u> <u>2. 제8조제1항에 따른 예시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u> <u>3. 제10조제2항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농수산물의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u> ③ <u>수급조절위원회는 위원장과</u>

제6조(계약생산) ① . ② (생
략)
<신 설>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수급조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회의록을 작
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
다고 인정하면 속기나 녹음 또
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
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
호에 따른 개인정보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
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수급조절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계약생산) ① . ② (현행
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
생산을 통한 주요 농산물의 원
활한 수급과 적절한 가격 유지
를 위하여 생산자단체 및 농산

	<u>물 생산자(이하 “생산자단체등”이라 한다)와 협의하여 매년 계약생산의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 과정에서 작황 부진이나 시장가격 상승 또는 하락으로 발생하는 생산자단체등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다.</u>
<u><신 설></u>	<u>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계약생산 또는 계약출하를 성실히 이행하는 생산자단체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u>
<u><신 설></u>	<u>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목표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⑦ 제3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제4항에 따른 손실의 보전 및 제5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8조(가격 예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	제8조(가격 예시) ① ----- ----- -----

-----생산자와 소비자들-----
-----하한가격과 상한가-----
격-----

② ----- 생

산량, 예상 수급상황 및 농가경

영상황-----.

③ -----

----- 협의하

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
라 가격을 예시한 경우에는 예
시가격을 지지(支持)하기 위하
여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연
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
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5. (생략)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 저장성이 없는 농산
물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생산
자 또는 생산자단체로부터 제5
4조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기
금으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
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
에서 해당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후 수급조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④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9조의2에 따른 소비자

보호 시책의 시행

4.·5. (현행과 같음)

제9조(과잉생산 시의 생산자 보
호) ① -----
농산물의-----

-----.

-----.

② . ③ (생 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채소류 등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생산·출하 안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 설>

⑤ (생 략)

<신 설>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산물의-----

-----.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선제적 수급조절을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면적 관리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9조의2(가격폭등 시의 소비자 보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폭등으로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매한 농산물의 판매
2. 생산자단체등, 저장업자, 도매업자·소매업자 등이 보유
한 농산물의 판매 지원
3. 취약계층을 위한 농산물 이
용권 지급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

제9조의2(물수농산물등의 이관)
(생략)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생략)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에 대하여 현저한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생산자등 또는 생산자단체가 요청할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지역의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자등에게 생산조정 또는 출하조절을 하도록 하는 유통조정명령(이하 “유통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신 설>

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3(물수농산물등의 이관)
(현행 제9조의2와 같음)

제10조(유통협약 및 유통조절명령) ① (현행과 같음)

[illegible]

제13조의2(비축사업 관리) ① 제1

3조제4항에 따라 국영무역 품목에 해당하는 수입비축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는 농산물 수입을 위한 사전검토 사항, 수입 및 판매 계획, 공급업체 선정,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당해연도 국영무역 품목에 대한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을 매년 3월말까지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탁사업자로부터 수입농산물을 공급받은 자는 당해연도 국영무역 수입농산물판매실적을 다음해 상반기까지 위탁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실적을 토대로 물가안정 등 사업 효과성과 배분의 적절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점검결과

<신 설>

를 토대로 실수요자, 생산자, 농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위탁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사업자는 통보받은 의견수렴 결과를 다음연도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수입농산물관리운용계획 수립 및 반영·판매실적·사업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농산물가격안정제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 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고 수급을 안정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며,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평균 가격(직전 5년 중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제외한 평균 가격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되 생산비용 및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이하 “농산물가격안정제도”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산물가격안정제도의 대상 농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연도에 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생산된 품목에 한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민의 식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채소, 과일 등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한 대상 품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확정·고시된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대상 품목의

<신 설>

기준가격을 제1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고
시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
물가격안정제도의 차액(기준가
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말한
다. 이하 같다) 지급비율을 제1
6조의3에 따른 농산물가격안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16조의3(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
원회) ①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를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
림축산식품부에 농산물가격안
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1.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필요
한 대상 품목
2. 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및 시
장가격
3. 차액의 지급비율
4. 적정 재배면적, 생산량 등의
관측 및 추계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

하는 사항에 대한 선정 및
확정 주기

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
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농
림축산식품부차관이 되며, 위원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
산식품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
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
하는 사람이 5명 이상이어야
한다.

1. 농산물 가격 및 수급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
하는 공무원

2. 품목별 생산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농산물가격안정제도
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
에 맞는 사람

	④ <u>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제55조(기금의 조성) ① (생략)
1. · 2. (생략)	1. · 2. (생략)
3. <u>제9조의2제3항</u> , 제16조제2항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납입되는 금액	3. <u>제9조의3제3항</u> , ----- ----- -----
4. (생략)	4. (생략)
② (생략)	② (생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제57조(기금의 용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설></u>	<u>1의2. 제6조에 따른 계약생산</u>
2. 제9조, 제9조의2, <u>제13조</u> 및 「종자산업법」 제22조에 따른 사업 및 그 사업의 관리	2. ----- <u>제9조의3, 제13조</u> ----- ----- -----
2의2. (생략)	2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2의3. 제16조의2에 따른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시행</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생략)	제90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② -----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3. (생 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1. ~ 3. (생 략) <u>3의2.</u> (생 략) <u>4.</u> (생 략) <u>4의2.</u> (생 략) <u>5. · 6.</u> (생 략) ④ (생 략)	----- -----. 1. <u>제13조의2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③ ----- -----. 1. <u>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u>4의2.</u> (현행 제3호의2와 같음)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u>5의2.</u>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u>6. · 7.</u>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